

# 학교법인 레마학원

##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7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개최 일시 : 2020.11.26.(목) 18:30~19: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0.11.16.)
2. 개최 장소 : 화상회의(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회의 : 증빙자료 별첨)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6인) : 윤원영(이사장), 노만균, 송 민, 이미순, 임성빈, 조장환
    - 감사(2인) : 권성연, 조영임
  - 불참 임원
    - 이사(1인) : 박종환
- ※ 배석 : 법인사무국장 정영준, 총무팀장 방진희




#### 4. 안 건

[보 고]

- (1) 제1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사임

[심 의]

- (1) 제1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 (2) 제2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
- (3) 제3호 :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간서명	노만균 	이미순 	조장환 
-----	---	--	---

## 5. 회의 내용

### □ 개회 선언, 기도 및 전차 회의록 접수

- 이사장(의장) : 재적이사 7인 중 6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기도를 한 후,  
법인사무국장의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대하여는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하다. 안건 보고와 심의는 보고 1건과 심의 3건을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알리다.

### □ 보고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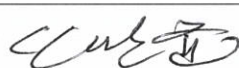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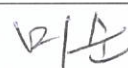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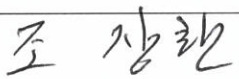
####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사임

- 이사장(의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사임”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정영준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정영준 사무국장 : “임원(이사) 사임” 건에 대하여,
  - 개방이사 겸 교육이사인 예명대학원대학교 이명범 총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2020.09.30.자로 이사직을 사임했으며, 후임 이사는 이번 제3차 이사회에서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보고하다.
  - 또한, 임원 사임의 효력은 판례를 예시로 들며 임원의 사임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될 경우 효력이 발생하고 사임의 효력의 발생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을 회의자료 내용대로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참석 이사들의 특별한 질문이 없어) 다음 안건인 심의 안건으로 넘어가겠다고 선언하다.

### □ 안건 심의

####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 이사장(의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정영준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정영준 사무국장 : 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 (1) 변경 사유
    - 2020.09.25. 자 시행된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려는 것임

간서명	노만균 	이미순 	조장환 
-----	---	--	---

(2) 주요 변경 내용

- 교비회계의 수입 및 재산을 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함(제9조)
-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명시하여 자격을 제한함(제20조의2)
- 교육경험 이사(교육이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함(제21조)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제30조의2)
- 육아 및 입양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휴직기간을 명확히 함(제39조)
- 육아 및 입양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를 명시함(제41조의2 신설)

(3) 신규 조문 대비표(별첨 자료)

~ 등의 법인 정관 변경(안)을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임성빈 이사 : 최근에 시행된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번 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노만균 이사 : 임성빈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송민 이사 : 노만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정관 변경안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

- 이사장(의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에 대하여,

(1) 제안 이유

- 개방이사 겸 교육이사인 예명대학원대학교 이명범 총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2020.09.30.자로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사 3인(개방이사 1인 포함)이 2021.02.01.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자 함

간서명	노만균 	이미순 	조장환 
-----	---	--	---

- 사임 및 임기만료예정 이사 현황 (4인)

구 분	성 명	임 기 (3년)	비 고
사 임	이 명 범	2020.02.14. ~ 2023.02.13. (*2020.09.30.자 사임)	중임, 교육이사, 개방이사
임기만료 예정	노 만 균	2018.02.02. ~ 2021.02.01.	중임, 개방이사
	박 종 환	2018.02.02. ~ 2021.02.01.	
	이 미 순	2018.02.02. ~ 2021.02.01.	교육이사

(2) 개방이사 선임

-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이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2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후보자 2배수(4인)을 추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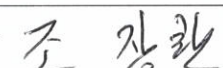
\* 2020학년도 제1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2020.11.17.)

-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현황(4인)

구 분	성 명	연 령(만)	비 고
중 임	노 만 균	73세	현, 개방이사
신 임	최 익 영	57세	
	이 영 희	51세	
	김 순 옥	60세	

(3) 법령 및 정관의 관련 내용

- 사립학교법(제14조, 제21조, 제24조)
  -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 보충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음
    -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
    -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 제외)이었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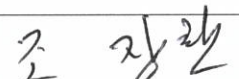
간서명	노만균 	이미순 	조장환 
-----	---	--	---



-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학교법인 정관(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 보충
  - 임원 선임은 임기만료 2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
  - 개방이사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개방이사 정수는 이사정수의 4분의 1
  -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4) 이사 선임시 고려사항

- 개방이사 : 이사정수의 4분의 1(8인 중 2인)
  - 사임 및 임기만료예정 2인 외에 재직 개방이사가 없으므로, 후임 개방이사 2인 선임이 필요함(중임 가능)
  - 사임 이사 후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교육이사 :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8인 중 3인 이상)
  - 사임(중복) 및 임기만료예정 2인 외에 재직 교육이사가 2인이므로, 후임 1인은 교육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 일반이사 : 1인 선임(중임 가능)
  - ~ 등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사유 및 개방이사 후보자 이력서 등 회의 자료로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안건 설명에 대해 이사들의 질문이 없으므로 이사 선임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다.
- 이사장(의장) : 먼저, 개방이사 2인 선임을 선언하고, 당사자인 노만균 이사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잠깐 화상회의에서 나가서 기다려 주기 바라며 곧 다시 회의에 초대하겠다고 하다. (노만균 이사 회의에서 나감)
- 조장환 이사 : 노만균 이사는 그동안 법인과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언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개방이사를 맡아 주었으면 하고, 신임 개방이사는 후보자 모두가 역량이 있는 분이지만 학교의 건학이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명대학원대학교 동문이기도 한 이영희 후보자를 추천하며, 다만, 신임 개방이사의 임기는 보선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다.
- 이미순 이사 : 조장환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임성빈 이사 : 이미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간서명	노만균 	이미순 	조장환 
-----	---	--	---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개방이사 선임 건은 노만균 후보자와 이영희 후보자 2인을 선임하고, 이영희 후보자의 임기는 관할청의 취임 승인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인 2023년 2월 13일까지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사장(의장) : 다음은 내년 2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일반 이사 2인의 후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당사자인 이미순 이사는 회의에서 잠깐 나가주고 노만균 이사는 다시 회의에 초대할 것을 지시하다.  
(이미순 이사 회의에서 나가고, 노만균 이사 회의에 다시 들어옴)
- 이사장(의장) : 이사들에게 일반 이사 선임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노만균 이사 :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박종환 이사와 교육이사인 이미순 이사는 그동안 회의 때마다 학교 법인과 대학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고견을 주시기 때문에 연임하여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조장환 이사 : 노만균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임성빈 이사 : 조장환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일반 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일반 이사 선임 건은 현 이사이신 박종환 이사와 교육이사이신 이미순 이사가 연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호 안건)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 이사장(의장) :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을 상정하며, 오늘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을 할 이사로 노만균 이사, 이미순 이사와 조장환 이사를 지정하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다.
- 노만균 이사, 이미순 이사, 조장환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이사장(의장) : 간서명할 이사 3인과 다른 참석이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노만균 이사, 이미순 이사, 조장환 이사가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간서명	노만균 	이미순 	조장환 
-----	---	--	---

6. 폐회 선언

- 이사장(의장) : 더 이상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 정관 변경 내용(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0. 11. 26.

학교법인 레마학원 이사장	윤원영	<u>윤원영</u>
이사 노만균		<u>노만균</u>
이사 송민		<u>송민</u>
이사 이미순		<u>이미순</u>
이사 임성빈		<u>임성빈</u>
이사 조장환		<u>조장환</u>
감사 권성연		<u>권성연</u>
감사 조영임		<u>조영임</u>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b>제9조(회계의 구분)</b>                      ① ~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u>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b>제9조(회계의 구분)</b>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u>전출·대여하거나 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제29조(개정) 내용 반영</p>
<p><b>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b>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u>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u>라야 한다.</p>	<p><b>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b>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u>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u>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u></p> <p>1. <u>이 법인의 설립자</u>                      2. <u>이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 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u>                      3. <u>이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u>                      4. <u>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u></p>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개정) 내용 반영</p>
<p><b>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b>                      ① ~ ② (생략)                      ③ <u>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u>라야 한다.</p> <p>④ ~ ⑧ (생략)</p>	<p><b>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b>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u>이어야 한다.</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제21조(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신설) 내용 반영</p>

간서명	노만균 <i>노만균</i>	이미순 <i>이미순</i>	조장환 <i>조장환</i>
-----	----------------	----------------	----------------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b>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b>  <u>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b>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b>  <u>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개정) 내용 반영</p>
<p><b>제39조(휴직의 기간)</b>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5. (생략)  6. <u>제38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7. ~ 11. (생략)</p>	<p><b>제39조(휴직의 기간)</b>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u>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u>  7. ~ 11.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 제59조(개정)의 내용 반영</p>
<p>&lt;신설&gt;</p>	<p><b>제41조의2(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b>  <u>임용권자는 제38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의 규정에 따른다.</u></p>	<p>사립학교법 제59조(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신설) 내용 반영</p>

간서명	노만균 <i>노만균</i>	이미순 <i>이미순</i>	조장환 <i>조장환</i>
-----	----------------	----------------	----------------

(화상회의 증빙자료)



간서명	노만균 <i>노만균</i>	이미순 <i>이미순</i>	조장환 <i>조장환</i>
-----	----------------	----------------	----------------